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및 의무** | 보험계약 전, 후 알릴 의무 : 계약청약 전, 후 직업 등 위험의 변경시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동물의 치과치료비, 동물의 마취 및 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동물의 십자인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반려동물 미용업 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수의사의 진단이 없는 질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기환급금**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약관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또는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가 환급되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전화 1332 / 홈페이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한국소비자원 : 전화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설명 의무에 대한 유의사항** |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은 배상책임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소개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애(부작용)를 입혀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본 프로그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단체계약입니다. 협약에 따라 보험가입시 단체계약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단체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입을 위한 일반사항 안내

가입기간

- 1년

가입효력

- 은행계좌로 해당 보험료가 가입일 전까지 입금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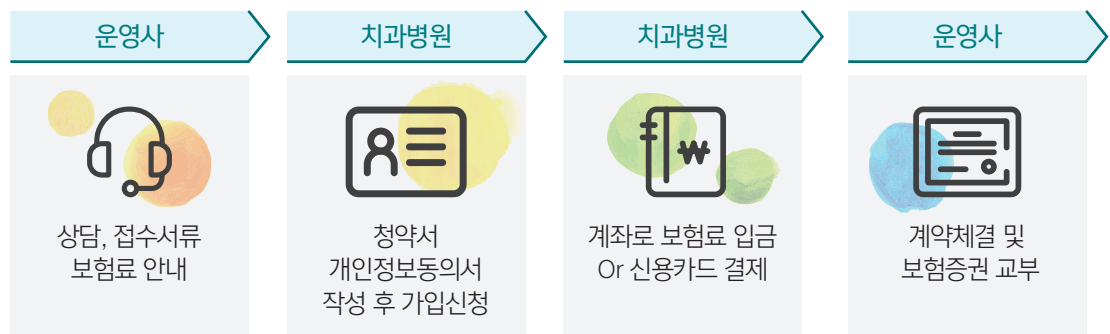
가입대상

- 치과의사

필수서류

- 청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입절차



보험료 납입 및 가입문의

inmps@hanmail.net

02-762-1870

02-2179-8527
02-762-3340
02-762-3364

KEB하나
630-004614-135

Tel 1544-7845

@ 이메일

전화

Fax

납입계좌 안내

사고접수(세종손사)



갱신 주요내용

01 기본보험료 1.8% 인상

02 특약, 사고자할증, 무사고자 할인 등 기타조건 : 전년 동일



보통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전문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증서 상 소급 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보장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배상청구기준)**
- 임플란트시술과 교정시술의 담보여부를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의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0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0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기타 보상하는 손해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

01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02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03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04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의료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05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배상청구기준증권)

- ①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②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③ ①과 ②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주요내용

특별약관 (선택가입) 상세내용

폭력사태 등 관련하여
특별약관 선택 가입을
통해 든든하게 보장 받
으세요!

구분	보상하는 손해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 보장 특별약관	- 의원 및 병원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예,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낙상한 환자)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 강요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 수습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시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경호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손해와 재물손해를 보상
관습상 비용 또는 형사합의금	의료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고 환자의 유족이 피보험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의료분쟁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에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건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보상
벌금 보장	의료행위의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형사방어비용 보장 I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
형사방어비용 보장 II	형사방어비용 보장 I에 추가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을 경우에도 형사방어비용을 보장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피해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 등으로 부득이 휴업하거나 회사의 요청에 의해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한 때에는 의료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하나의 병(의)원당 최대15일 한도 내에서 1일 300,000원의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의 휴업은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을 말합니다.
초빙의/마취의 보장	- 아래에 기재된 자도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일 경우 그에 소속 또는 고용되지 않은 자로서 기명 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마취의 포함) 2. 기명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그에 소속 또는 고용되지 않은 자로서 기명 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수진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에 소속 또는 고용된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마취의 포함)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	기본보장에서 제외되어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진료(이중 잘 못 성장한 턱을 정확한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손해분담 특별약관 (피보험자 분담비율)

각각의 청구에 대해 확정된 보상금액(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등)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비율은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손해액 (보험금 + 지급부대비)	피보험자 부담비율
1천만원 미만	10%
~ 2천만원 미만	20%
2천만원 이상	25%

적용 예)
배상책임금 4백만원(부대비 5십만원)
자기부담금 5십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후 금액 3백5십만원
피보험자 부담금 : 35만원(350x10%)
보험사 부담금 : 315만원(350x90%)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보통약관 (기본가입)

	구분		보상한도액 5천만원-1청구당 / 1억원-연간총보상한도액(치과의사 1인당)	
	임플란트 시술	교정시술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 100만원
기본보험료 (선택가능)	포함하지 않음	포함하지 않음	281,300	245,000
	포함하지 않음	포함	352,100	306,200
	포함	포함하지 않음	391,200	339,600
	포함	포함	462,200	400,900
갱신할인	무사고기간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할인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이상 무사고		23% 할인
사고할증	사고건수기준	1~3건		기본보험료
		4~10건		100% 할증
		10건 초과		인수제한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 기준	100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할증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0% 할증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50% 할증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0% 할증
		1,000만원 이상		400% 할증
연속사고할증	3년연속	진행중인 건 및 직전 3년 내 종결건		50% 할증
	4년연속	진행중인 건 및 직전 4년 내 종결건		인수제한

※ 구강안면외과 턱수술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사고할증은 단체계약 만기일 1개월 전(3월30일) 이전 3년간의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손해액은 부대비를 포함한 지급보험금 기준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약관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또는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선택가입)

구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특약보험료
일반배상책임 및 경호비용	2백만원.-1청구당/4백만원.-연간총보상한도액	10만원.-1청구당	100,000
	5백만원.-1청구당/5백만원.-연간총보상한도액	10만원.-1청구당	200,000
관습상 비용 또는 형사합의금	5백만원.-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95,000
벌금 보장	2천만원.-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36,000
형사방어비용 보장 I	5백만원.-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31,000
형사방어비용 보장 II	5백만원.-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62,000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파괴행위 보장	사망.후유장해 1억원.-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재물손해 1억원.-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40,000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30만원.-1일당/최대15일		185,000
초빙의/마취의 보장	5천만원.-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1백만원.-1청구당	288,000
구강안면외과 턱수술	1억원.-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1천만원.-1청구당	3,483,000